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4. 1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4.2.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8.4.4.
- 다. 상정일자 : 제21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2018.4.1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공보담당관 강 영 대

가. 제안이유

조례상의 ‘구정신문’ 명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법령에 맞게 ‘소식지’ 로 변경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로 변경 (제명)

나. 조례 입법취지 보완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식과 각종 생활정보 등”으로 구민에게 알리는 내용 추가 (안 제1조)

다. 소식지 발행과 활용

- “소식지는 지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게시할 수 있다”로 소식지 게시 내용 추가 (안 제4조)

라. 객원기자 임기 제한 규정 추가

- 객원기자의 다양성과 신규 유입을 위해 “객원기자 및 공무원이 아닌 모니터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안 제10조)

마. 광고를 게재할 수 없는 단서 조항 신설 (안 제11조)

- 소식지에 무료 또는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1. 구민의 정서에 반하여 거부감을 주는 내용
 2. 공익성을 훼손하는 내용
 3.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내용
 4. 과대 또는 허위 광고
 5. 성차별적이거나 잘못된 성고정관념 표현 등으로 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바.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식지 무상배부 내용을 조례로 규정 (안 제13조)

사. 활동 중인 객원기자의 임기 및 연임제한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 (안 부칙 제2조)

3. 검토보고 (유준상 전문위원)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신문’ 명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법령에 맞게 ‘소식지’ 로 변경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소식지는 지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게시할 수 있다” 로 소식지 게시 내용 추가하고,

안 제10조에는 객원기자의 다양성과 신규 유입을 위해 “객원기자 및 공무원이 아닌 모니터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에는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식지 무상배부 내용을 조례로 규정 하였음.

○ 검토의견으로

요즘 자치단체는 과거에 비해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미디어 매체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내고장마포 소식지는 매월 8만부가 발행되고 평균 구독률이 약 76%인 만큼 매우 중요한 구정 홍보수단이며, 구민과의 주요 소통채널의 의미가 있으므로 구민이 이해하기 쉽고 알차게 편성되어야 함.

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소식지 게시 방법의 다양화, 불필요한 광고 게재 차단 근거 마련, 객원기자의 임기 설정 등은 시대 변화에 맞춰 구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